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안 본격 논의 시작

- 민간위원 워크숍 개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대한 심의
로드맵 중점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5일(금) 오전 10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수립, 인간 대상 연구심의 면제, 잔여 배아 이용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제7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인,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 의학교실 교수가 위촉(‘26.3.3.)되었다.

이번 민간위원 워크숍은 제7기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특히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위원회 심의 로드맵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관련 사항으로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 확대(현입종기→확대말기),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범령보완방안,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등이 제기되었다.

제7기 위원회는 이번 민간위원 워크숍을 시작으로 정기회의,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하여 생명윤리 분야의 다양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형훈 제2차관은 “생명윤리가 기술 발달의 속도를 늦추는 규제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여 보다 빠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또한, “초고령 사회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의 사회적 공론화에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김옥주 신임 위원장은 “제7기 위원회가 생명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현장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명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7기 위원 명단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요

담당 부서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소연 (044-202-2610)
		담당자	사무관	최지웅 (044-202-2618)



붙임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7기 위원 명단

- 위원장 : 김옥주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예정
- 위원 (위원장 포함 19인)
 - 위촉직 : 13인 (임기 3년)
- (위원명단) 19명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9명)

직 위	성 명	현 직	분야
위원장 (위촉직)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과학·연구
위촉위원 (12명)	남진우	한국연구재단 차세대바이오단 단장	”
	강지승	고려대 보건환경과학부 조교수	”
	김용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
	류성호	순천향대학교 의대교수	”
	장원배	제주대학교 의대 교수	”
	강신경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종교·윤리 법조·시민
	김완구	호서대학교 창의교양학부 교수	”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교수	”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창환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	”
	이현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차현재	한국생명윤리학회 교육이사보	”
당연직위원 (6명)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수석간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간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붙임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요

I.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요 및 해외사례

- (설치 근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
- (법적 기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 잔여배아를 체외에서 연구하는 목적에 관한 사항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 목적에 관한 사항
 -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 및 임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연임 가능)

위촉직(14인)	과학계(7인)	생명과학·의과학·사회과학 등의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윤리계(7인)	종교계·윤리학계·법조계·시민단체 또는 여성계를 대표하는 자
당연직(6인)	정부위원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간사), 법무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수석간사), 성평등가족부장관

- (전문위원회)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5개 전문위원회와 한시적인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가능

* 5개 전문위원회 : 생명윤리·안전정책전문위원회, 배아전문위원회, 인체유래물 전문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